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
----------	-----

제출년월일 : 1998.7.

제출자 : 중구청장

1. 제안이유

- IMF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작성 통보해 옴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본조례를 개정코자 함.

2.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행정자치부 세제13400-89('98. 5. 27)호 및 울산광역시 지방세13400-632('98. 5. 29)호의 「지방세감면조례증개정안 통보」

3. 주요내용

-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100분의50)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범위를 확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 '98. 6. 12~7. 1(경상일보, 울산매일)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60제곱미터이하인”을 “85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제14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용면적 <u>60제곱미터이하인</u>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u>85제곱미터이하인</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구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증 “60제곱미터이하인”을 “85제곱미터이하인”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생략)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생략)

1.(현행과 같음)

2. ----- 85제곱미터이하인

3.(현행과 같음)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19호)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8. 7. 15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 위원회회부 : '98. 7. 15

라. 위원회상정 : '98. 7. 23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중무국장)

○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을 전용면적 60m² 이하에서 80m²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감진상)

○ 전국적인 통일 사항으로서 재산세 과세 시점을 매년 5월1일로 하고있어, 올해는 해당이 되지 않으며,

○ 특히 우리 중구는 60m²이상 85m²이하 임대 공동주택은 현재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